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4. 12 선고 2023가합100987 판결 [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복동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2.

판 결 선 고 2024. 4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39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(이하 ‘이 사건 오피스텔’이라 한다)의 시행위탁자로서 2022. 2. 14. 피고와, 위 오피스텔 D호와 E호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각 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아래 표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,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, 잔금은 입주 예정일에 각 지급받고(제1조 제2항),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%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(제5조 제1항) 약정하였다.

호수	계약금	중도금	잔금	매매대금
D호	30,200,000원	10,000,000원	261,800,000원	302,000,000원
E호	30,400,000원	10,000,000원	263,600,000원	304,000,000원

나.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. 9. 28.부터 2022. 11. 30.까지였다.[인정근거] 다툴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60,600,000원(= D호 계약금 30,200,000원 + E호 계약금 30,400,000원) 및 중도금 6,000,000원(= D호 중도금 3,000,000원 + E호 중도금 3,000,000원)의 합계 66,6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39,400,000원(= D호 매매대금 302,000,000원 + E호 매매대금 304,000,000원 -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66,6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2. 1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1)

재판장 판사 조정민, 판사 김태현, 판사 김지원

1)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2024. 4. 11.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종전 주장과 크게

다르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고한다.